

주식회사 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의사록

일시 : 2020년 8월 6일(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17층 본점 대회의실

상법 제390조 제4항 및 정관 제34조에 따라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 | | |
|------------------|-------------------|
| • 법인이사 총 수 : 1 명 | • 출석 법인이사 수 : 1 명 |
| • 감독이사 총 수 : 2 명 | • 출석 감독이사 수 : 2 명 |

의장인 법인이사 (주)에이아이엠투자운용(“의장”)은 직무수행자로 현나영을 지정하고, 지정자인 현나영은 이를 수락하여 의장석에 등단한 후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주재하다.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에 의하여 신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현행 정관 제1조,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4항, 제26조, 제42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부칙을 변경하고, 제9조2, 제18조5항, 제42조2, 제43조3항7호다목, 제47조 2항2호사목을 추가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별지목록1과 같이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심의를 구한바 이에 출석한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이의없이 승인 가결된다.

별지목록1. 정관 신·구대조표

제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의장은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결의해 줄 것을 제의하자 출석 이사들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결의사항: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2020년 8월 6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17층 본점 대회의실

안건: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을 전부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한다.

(13시 00분)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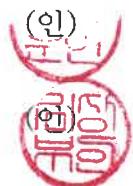
2020년 8월 6일

주식회사 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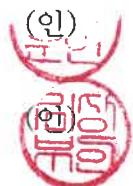
법 인 이 사 (주)에이아이엠투자운용



감 독 이 사 소 병 운



감 독 이 사 김 상 부



별지목록 1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제 1 조 (상호) 회사의 상호는 영문으로는 “A.I.M. Overseas Value Investment I REIT Co., Ltd.” 라 한다.</p> <p>제 2 조 (목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2. 부동산의 개발 3. 부동산의 임대차 4. 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7.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관리·처분 8.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 	<p>제 1 조 (상호) 회사의 상호는 영문으로는 “A.I.M. Cross-border Value Investment 1 REIT Co., Ltd.” 라 한다.</p> <p>제 2 조 (목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그 자산을 부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및 이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 2. 부동산개발사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수정

<p>제 9 조 (주식의 종류)</p> <p>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p>	<p>제 9 조 (주식의 수와 종류)</p> <p>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종류 주식인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으로 한다.</p>	<p>수정 추가</p>
	<p>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p> <p>③ 회사는 [6,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종 종류 주식을, [4,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종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p>	
	<p>제 9 조의 2 (주식의 내용)</p> <p>①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 주식은 각각 이익배당 시 제2항에 기재된 순서 및 내용으로 이익배당을 받고, 잔여재산의 분배 시 제3항에 기재된 순서 및 내용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의결권부 종류주식으로</p>	<p>추가</p>

한다.

② 회사는 해산 결의 직전 결산기 까지 매 결산기에 회사가 발행 한 주식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을 다음의 순서와 내용으로 배당한다.

단, 본항과 본조 제3항에서 말하는 1주의 “발행가액”이라 함은 각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출자금(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 한다)을 회사가 투자 대상인 AIM US Real Estate Corporation 발행 보통주식의 취득을 위해 미국달러(USD)로 환전한 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미국달러(USD) 금액을 말한다.

1. 회사는 각 주식에 대하여 미국달러(USD)로 이익을 배당한다.

2.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

가. 회사는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제1종 종류주식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의 연 8.5%의 비율로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단,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위 보유기간을 대신하여 회사가 AIM US Real Estate Corporation 발

	<p>행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당해 결산기 말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p> <p>나.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결산기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결산기의 배당시에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p> <p>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1종 종류주식에게 배당하지 아니한다.</p>
	<p>3.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p> <p>가. 회사는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제2종 종류주식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의 연 8.5%의 비율로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단,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제2호 가목 단서가 적용된다.</p> <p>나.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결산기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결산기의 배당시에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p> <p>다.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2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제3호 가목)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제2종 종</p>

	<p>류주식을 참가시켜 초과분의 25%를 제2종 종류주식에, 초과분의 나머지 75%를 보통주식에 각각 배당한다.</p> <p>4.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p> <p>제2호 가, 나목 및 제3호 가, 나목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p>
	<p>회사가 청산되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미국달러(USD)로 분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 조 제2항 2호 나목에 따른 제1종 종류주식의 누적 미배당분 상당액을 분배한다. 2.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3.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 조 제2항 3호 나목에 따른 제2종 종류주식의 누적 미배당분 상당액을 분배한다. 4.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5. 보통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20%는 제1종 종류주식에, 33%는 제2종 종류주식에 안분하여 각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고, 나머지는 보통주

	<p>식에 각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한다.</p> <p>④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p>	
<p>제 12 조 (신주인수권)</p> <p>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이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라고 하면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의미한다).</p> <p>1. 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신청 또는 등록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신주발행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p> <p>2.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p>	<p>제 12 조 (신주인수권)</p> <p>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이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라고 하면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의미한다).</p> <p>1. 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신청 또는 등록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신주발행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p> <p>2. 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수정	수정

우	<p>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에 의하여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 이전에 발행된 주식의 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p> <p></p> <p>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에 의하여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 이전에 발행된 주식의 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p> <p></p> <p>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수정
제 15 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p>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제 15 조의 3 (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p> <p>회사가 회사의 사채를 전자등록하기로 하는 시점부터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수정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p>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p>	수정	

<p>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p>	<p>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이어야 함)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p>
<p>제 18 조 (주식매수청구권)</p> <p>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p>	<p>제18조 (주식매수청구권)</p> <p>④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내역을 기록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거나 그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p> <p>⑤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p>
<p>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p> <p>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p>	<p>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p> <p>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수정</p>

<p>3.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부투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에서 정한 주주 배당수익이 30% 이상 하락할 것이 예상되거나, 회사의 총자산의 30% 이상인 부동산, 증권을 처분하는 계약 등 부투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다만, 총자산의 30% 이상인 부동산 또는 증권을 처분하는 계약의 경우, 부투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에서 이미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함.</p>	<p>3.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하여 회사의 총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처분 계약 등 부투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다만, 총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라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서 이미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함.</p>	수정
<p>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다만, 제2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p>	<p>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다만, 제2항 제12호 내지 제14호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p>	수정

<p>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 의 수로써 한다.</p>	<p>수로써 한다.</p>	
<p>제 42 조 (자산의 투자 · 운용) 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 운용하여야 한다.</p> <p>1. 부동산의 취득  량 및 처분</p> <p>2. 회사 총 자산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개발사업</p> <p>3. 부동산의 임대차</p> <p>4.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지배 내지 경영 관리</p> <p>5. 부투법상 부동산 관련 증권에 대한 투자 기타 증권의 매매</p> <p>6. 금융기관에의 예치</p> <p>7. 지상권 ·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 관리 · 처분</p> <p>8.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 · 관리 · 처분</p>	<p>제 42 조 (자산의 투자 · 운용)</p> <p>① 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 운용하여야 한다.</p> <p>1. 부동산 2. 부동산개발사업 3. 지상권 ·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p> <p>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p> <p>추가</p> <p>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p> <p>2.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p> <p>3. 부투법이 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부투법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부투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p>	

<p>제 43 조 (자산의 구성)</p> <p>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하는 경우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부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다.</p> <p>7.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채무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p>	<p>제 43 조 (자산의 구성)</p> <p>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하는 경우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부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다.</p> <p>7.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채무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p>	<p>수정</p> <p>추가</p>
--	--	---------------------

한 모든 금액	다.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대출한 모든 금액	
제 47 조 (업무의 위탁) ② 회사가 각 수탁회사와 체결할 위탁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식판매 위탁계약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 47 조 (업무의 위탁) ② 회사가 각 수탁회사와 체결할 위탁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식판매 위탁계약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2.자산보관계약	2. 자산보관계약	추가
	<p>사. 필요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금융기관 등 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공매 등을 통한 매각대 금을 그 금융기관에 우 선적으로 배분하는 내 용.</p>	
제 48 조 (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① 회사는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일반사무수탁계약 및 주식판매 위탁계약의 체결, 변 경 및 해지에 대하여는 이사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8 조 (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① 회사는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변경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일반사무수탁계약 및 주식판매 위탁계약의 체결, 변 경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수정
제 51 조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제 51 조 (투자보고서의 작성, 공시 등)	

① 회사의 법인이사는 다음 표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매 분기마다 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그 자산관리회사를 통하여 다음 표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매 분기마다 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구분	투자보고서 작성일	투자보고서 제출 및 공 고기한	구분	
1	회계기간의 말일(단, 해산 또는 합병으 로 인하여 소 멸되는 부동 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 산일 또는 합 병일을 말함)	(작성일이 해산일 또는 합병일에 해 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90일 이내 (작성일이 해산일 또는 합병일에 해 당하는 경 우) 작성일 로부터 45일 이내	1	회계기간의 말일(단, 해산 또는 합병으 로 인하여 소 멸되는 경우) 에는 해산일 또는 합병일 을 말함)
2	사업연도 개 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 되는 날(회계 기간의 말일 은 제외)	작성일로부터 45일 이내	2	사업연도 개 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 되는 날(회계 기간의 말일 은 제외)
③ 회사의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부투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및 부투법 제37조 제3항, 제4		③ 회사는 그 자산관리회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부투법 제37조 제3항, 제4		

<p>법 시행령 제40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p> <p>1. 법인이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 최근 3년 이내의 경력</p> 	<p>항 및 부투법 시행령 제40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p> <p>1. 회사가 자산관리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 최근 3년 이내의 경력</p>	<p>수정</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p> <p>1. 법인이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p> <p>1.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p>	<p>수정</p>
<p>제 53 조 (이익의 배당)</p> <p>③ 회사가 제11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총자산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p>	<p>제 53 조 (이익의 배당)</p> <p>③ 회사가 제11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총자산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결정된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 할 수 있다.</p>	<p>수정</p>

<p>제 54 조 (이익배당의 지급)</p> <p>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② 회사는 이익배당을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54 조 (이익배당의 지급)</p> <p>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5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② 회사는 이익배당을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5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수정</p>
<p>부 칙 <2020. []. [].></p> <p>제 1 조 (시행일)</p> <p>이 정관은 2020년 8월 []일 부터 시행한다.</p>		